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9224 제출연월일: 2022. 12.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나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가보험・공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6조의10 제2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관장 사무, 피해 시설의 기능 및 재난·사고 유형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어"로, "위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 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수 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용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안전지수의 개발·조사"를 "안전진단"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표절차"를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

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이하 "재 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⑥ 다수의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1항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5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u><단</u>	<u>다만,</u>
<u>서 신설></u>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
	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관장
	사무, 피해 시설의 기능 및
	재난・사고 유형별 관계 중
	<u>앙행정기관 등을 고려하여</u>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u>을 말한다.</u>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4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 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생 략)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u>제15조의2</u> <u>제2항</u>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⑤ ~ ⑦ (생 략)
-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저 등) ①·② (생 략)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 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 위에서 <u>제15조의2제2항</u>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

1. (현행과 같음)
2
<u>제15조의2제</u>
<u> 3항</u>
(전 세계 기 ()
5 ~ ⑦ (현행과 같음)
에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증) ①·② (연맹과 실금) ③
3
<u>제15조의2제3항</u>
 에15고이어(즈이 미 키허리ㅋ스스

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u>②</u> ~ <u>⑧</u> (생 략)

<u><신</u> 설>

본부) ①
있어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u>.</u>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u>⑨</u> (현행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에게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 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용한 개선과제 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분기별 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 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생 략)

<신 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u>안전지수</u> 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u>공표절차</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 공제의 가입 등) ① 삭 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

(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 등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③</u>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u> </u>
<u>④</u> <u>안전진단</u>
<u>5</u>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기준
세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등)
②
<u>시설(이</u>
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
<u>을</u>

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 ⑥ 다수의 보험사업자는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 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 료 · 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 를 하여야 한다.
-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 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 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 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 조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 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 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 의제) ①
<u>제78조제3항</u>
 ② 제78조제4항

|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 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 한 보험사업자
-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